

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

[] 인

[] 변경인정

통지서

훈 령 기 관	명 칭	대표자 성명
	소재지	(전화번호 :)

인 정 훈 령 과 정 (변 경) 내 용

훈련 과정명	훈련 내용	훈련기간 (훈련시간)	훈련방법 (훈련장소)	훈련시설· 장비	훈련교사· 강사	인정일
						. . .

변 경 사 항	
---------	--

「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」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4항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([] 인
정 [] 변경인정)을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.

년 월 일

고 용 노 동 부 장 관

※ 본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인정변경인정 통지서는 「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」 제52조제2항제
5호의2에 따라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이 확인·발급합니다.

한국산업인력공단
이사장(○○지역본부·지사)



행정심판·행정소송 안내

이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, 처분이 있는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
하거나,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, 처분이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.